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1월 12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20년 11월 25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6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0년 11월 25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안전교통과장)

### 가.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시군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반영하고, 지진 발생 시 피해시설물에 대하여 지진  
피해시설물 평가단 운영을 통한 신속한 조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지진 피해시설물 평가를 위한 평가단 자격사항 반영(안 제3조)
-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평가단 등록신청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추가(안 제4조)
- 위험도 평가 위험 등급의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 통제(안 제5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용섭)

- 본 조례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의 내용인 지역대책본부장(군수)의 지진 발생 후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해야 함을 근거로 하여 2013년에 처음 제정되어 온 기존 조례를

올해 6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체계적인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내용을 담아 표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안 제3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 10명 이내의 구성과 평가단원의 요건

안 제5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의 활동(평가계획 수립, 평가결과 표지부착·출입통제)

안 제3조에서는 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부.

##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평창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1. 관할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 (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 및 각 목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 또는 임명하여 구성한다.

####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건축 관련 분야 6급 이상의 공무원

마.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6급 이상의 공무원

라.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④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⑤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할구역 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험도 평가단원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평가단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단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 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부장이 해당 연도의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한 경우

2. 평가단원이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본부장이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

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④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하여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해당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1. 위험(별지 제3호서식)
2. 주의(별지 제4호서식)

### 3. 안전(별지 제5호서식)

⑤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등급이고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⑥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원도 또는 인근 시·군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강원도 및 다른 시·군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지원)**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위촉된 단원에 대해서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

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모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우리 군은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평가단 등록 및 운영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평가단 운영을 할 수 없어 평가단 등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보험 가입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평가단 운영(상해보험 가입 등)을 할 수 없어 등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보험사	보험 가입	주민등록번호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평가단 운영(상해보험 가입 등)을 할 수 없어 등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앞 >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명 :

소속 :

주소 :

위 사람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85mm×55mm

< 뒤 >

본 단원증을 분실, 습득하신 분께서는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  
부(Tel : 033-330-XXXX)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85mm×55mm

[별지 제3호 서식]

긴급 위험도 평가 결과 <빨강>

# 위험!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을 금함.**

평가자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별지 제4호 서식]

긴급 위험도 평가 결과 <노랑>

# 주 의!

**본 시설물의 사용에 주의바랍니다.**

평 가 자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별지 제5호 서식]

긴급 위험도 평가 결과 <초록>

# 안 전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함.**

평 가 자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평창군 소비자보호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 권익과 소비자 보호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기본권리가 실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 또는 농·축산, 어업 활동을 포함한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사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의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 활동을 위한 지원·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 **제2장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소비자단체의 지원**

**제4조(위해방지)** ① 군수는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군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기본생활 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 수집을 위하여 유급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으며,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군수는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관계 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소비자 교육 등)** ① 군수는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과 협조 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지급)** ① 군수는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장 부당거래의 방지**

**제9조(부당거래의 조사)** 군수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거래의 실태를 조사하고,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부당거래의 금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거래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판매 의도를 숨기고 접근하거나, 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오인(誤認)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하는 행위
2. 소비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여 집요하게 설득하거나, 심리적 불안을 일으키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3. 소비자의 경솔, 무경험, 절박한 사정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시키는 행위
4. 소비자나 소비자의 가족을 속이거나 협박하는 등 부당하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하게 하는 행위
5. 소비자의 청약 철회 등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당한 판매방법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1조(시정조치)** 군수는 사업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표시 및 광고 실태의 조사)** ① 군수는 소비자가 표시로 인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선택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정한 표시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이 방해받지 않도록 광고에 대한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정한 광고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계량 및 규격 실태조사)** ① 군수는 소비자가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규격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장 소비자 피해의 구제**

**제14조(피해구제의 신청)**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평창군 또는 소비자단체에 전화, 서신, 방문,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피해구제의 처리)**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교환, 환불, 수리 해약 등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자료의 검사 및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하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 품목별로 전

담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시험, 검사 의뢰)** 군수는 소비가 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공립 시험검사기관에 관계 물품의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피해구제 처리기한)** 군수는 소비자피해구제의 신청을 받는 경우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전화 및 방문 등의 상담 처리상황 및 결과는 전화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18조(피해구제처리의 중지)** 군수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피해구제가 신청된 것 중 당사자 간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9조(소비자피해의 조정)** 군수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사항 처리 중 사실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 다발적인 사항 및 사업자나 소비자 중 어느 한쪽이 합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피해구제기구와의 협조)** 군수는 소비자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피해사례의 공표)** 군수는 소비자 피해사례 가운데 주민에게 알려 피해의 확산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